수습직원 평가규칙

제 정 2020. 07. 08. 개 정 2023. 10. 13. 개 정 2024. 01. 05. 개 정 2024. 02. 23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 및 활용) ①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직원 수습기간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정규직원임용 및 경영실적평가급 지급에 활용한다.〈개정 2024.1.5.〉
- **제3조(평가방법 및 절차)** ①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.〈개정 2024.1.5.〉
 - 1. 실적 평가는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서면평가 비율은 50%, 면접평가 비율은 50%를 반영한다.〈개정 2023.10.13.,2024.1.5.〉
 - 2. 서면평가 위원은 연구책임자, 실장, 연구본부장, 원장,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외부 위촉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〈신설 2024.1.5〉
 - 3. 면접평가 위원은 원장, 연구본부장, 외부 위촉직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외부 위촉직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〈신설 2 2024.1.5〉

			피평가	자(수습직원)			
	구 분	61 7 71	전	전문직		0.64.71	
	7 正	연구직	전문연구원	전문행정원	정보직	운영직	
		연구부	서	비연구부서			
서면 평가	당연직(40%)	연구책임자(10% 본부장(10%),		팀장(20%), 실장(20%)			
(50%)	위촉직(10%)	외부전문가(10%)		외부전문가(10%)			
면접	당연직(30%)	본부장(15%),	원장(15%)	해당 실장(15%), 원장(15%)			
평가 (50%)	위촉직(20%)	외부전문/	' l (20%)	외부전문가(20%)			

4. 가점부여 : 정기간행물, 이슈브리핑, 학술지 게재실적, 교육참여 등 (최대 10점)

		가점	부여	비고
	/[섬대중	단 독	공 동	미끄
	원내외 정기간행물 원고게재	1회 1.0점	1회 0.5점	
연구직	국내 학술지(학진등재), 해외저널(SCI, SSCI 등)	1회 1.0점	참여율	최대
	논문게재	13 1.0 8	79 77 8	3점
전 문	이슈브리핑 작성	1회 3.0점	참여율	
연구원	국책사업 발굴 (아이템 기준)	1회 1.0점	1회 0.5점	
	정책지원 활동 (행사발표/토론, 정책컨설팅)	1회 0.5점	1회 0.2점	
관리직· 창의제'	전문행정원·공무직 : 교육수료, TFT참여, 봉사활동, 안 등	(평가조기	정위원회)	

- ② 근무성적평가 대상 시기와 평가기준일은 다음과 같다.
 - 1. 근무성적평가 대상 : 수습기간 〈개정 2024.1.5.〉
 - 2. 평가기준일 : 수습직원으로 최종 근무일 기준 1개월 전
- ③ 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. 〈개정 2024.1.5.〉
 - 1. 실적평가표 및 실적자료 제출 : 평가대상자는 실적평가표 및 가점대상 실적(정기간행물, 이슈브리핑 작성, 학술지 및 저널논문, 교육참여 등)을 기획조정실에 제출 〈개정 2024.1.5.〉
 - 2. 근무성적 평가 및 보고 : 연구책임자(직무관련자),실장, 연구본부장,원장, 외부평가위원은 서면 및 면접으로 〈별지 제2호, 제3호 서식〉에 의하여 근무성 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종합평가점수를 산출, 원장에게 보고 후 완료한다.〈개정 2024.1.5.〉
 - 3. 평가결과의 송부 :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피평가 당사자 및 운영지 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.
 - 4.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: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평가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규정 제 14조 규정에 의해 정규직원으로 임용 상정
- ④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은 〈별지 제1호 서식〉에 따른다.

제2장 수습직원 평가조정위원회

- **제4조(수습직원 평가조정위원회)** 평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연구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, 운영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(또는 외부전문가) 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

다.〈개정 2024.2.23.〉

- **제6조(간사)**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.
- 제7조(역할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- 1. 연구 및 활동실적 등 기타 업무실적의 평가방법
 - 2.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심의 · 의결
 - 3. 평가방법 및 절차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심의 · 의결
 - 4.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
- 제8조(이의신청) ①이의신청은 피평가자가 평가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〈별지 제4호 서식〉에 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연구기획부로 서면 제출한다. 다만, 근무평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.
 - ②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) 위원회의 부의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0.6.4.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**칙** 〈2023.10.1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식 〈2024.2.2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 <개정 2024.1.5.>

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

평	가항목		평가내용	비고
	연구 성과	연구직 및 전문 연구책임과 연 ⁻	제3장 연구부서 실적(양적)평가 준용 ·연구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의 연구과제 구참여 실적을 누적한 "J포인트 누적점수" ·영 [최종비율은 평조위에서 결정; 예) 40~50J=20점]	연구 부서
	직무	업무수행의 양	주어진 기간내에 어느 정도의 업무를 얼마만큼 수행 하였는가	비
서 면	성과	업무수행의 질	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공헌의 정도가 어떠하고 결과물 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	연구 부서
된 평 가	연구·직무	업무지식 및 정보화능력	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지식 및 기능을 잘 활용하였는가	
	역량 업무추진 능력		업무를 효율적·경제적으로 수행하고, 추진력 있게 수 행하였는가	
	조직 적응력	대인관계 및 적극성	대내외 인화에 노력하는 등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,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는가	공통
		근무태도 및 협동심	연구원 제규정에 따른 근무 태도가 양호하며 타인 및 타 분야 등과 성실히 협력 하였는가	
	발표 능력	발표자료 충실도 및 완성도	발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, 관련 내용의 완성도가 높은가	
	24	발표 능숙도	발표내용의 전달력, 발표 방식 및 태도 등이 능숙한가	
면	-1 II 7]	전문 분야 숙련도	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 량을 충분히 보유하여 성과창출의 가능성이 있는가	
접 평 가	전문성	전문 분야 기여 기능성	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분야의 업무심화 및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	공통
	발전	판단 및 이해력	업무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, 자료에 대한 객관적 판단능력 과 업무 이해능력을 기반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가	
	가능성	기획 및 창의력	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 능력과 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력을 보유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가	

<별지 제2호 서식> <개정 2024.1.5.>

수습직원(연구부서) 서면 평가표

평가항목	평가니	H 8	배	점	평가	점수
연구성과	실적(양적)평가비례 ** 직원평가규칙 제3장	20	20			
연구역량	업무지식 및 정보회) 능력	20	40		
선구역당	업무추진능력		20	40		
조직 적응력	대인관계 및 적극성	}	20	40		
<u> </u>	근무태도 및 협동선]	20	40		
	합 계		10	00		
평가자 의견						
구 분	소 속			성 명		
평가자						

수습직원(연구부서) 면접 평가표

소 속	직 급	성 명	
· ·	' -		

평가항목	평가니	18	H	위 점	평 フ	·점수
발표능력	발표자료 충실도 및	! 완성도	15	20		
발표등역	발표 능숙도		15	30		
전문성	전문 분야 숙련도		20	40		
신·눈·경 	전문 분야 기여 기	가능성	20	40		
버크 키느저	판단 및 이해력		15	20		
발전 가능성	기획 및 창의력		15	30		
	합 계			100		
평가자 의견						
구 분	소 속	직 급			성 명	
평가자						

<별지 제3호 서식> <개정 2024.1.5.>

수습직원(비연구부서) 서면 평가표

소 소	진 금	성 명	
<u></u>		0 0	

평가항목	평가니	Ĥ 용		削	점	평가	점수
7l T 1.1 -1	업무수행의 양			10	20		
직무성과	업무수행의 질	10	20				
기 및 어크	업무지식 및 정보	화 능력		20	40		
직무역량	업무추진능력			20	40		
	대인관계 및 적극	성		20	40		
조직 적응력	근무태도 및 협동	심		20	40		
	합 계			1	.00		
평가자 의견							
구 분	소 속	직	급			성 명	
평가자							

수습직원(비연구부서) 면접 평가표

소속	직 급	성 명	

평가항목	평가니	મ ે ક		배	점	평 フ	·점수
발표능력	발표자료 충실도	및 완성도		15	20		
발표하역	발표 능숙도			15	30		
전문성	관련 분야 숙련도	ī.		20	40		
신군 ⁷⁸	관련 분야 기여	가능성		20	40		
발전 가능성	판단 및 이해력			15	30		
발신 가능성	기획 및 창의력			15	30		
	합 계			1	00		
평가자 의견							
구 분	소 속	직	급			성 명	
평가자							

전북연구원장 귀하

<별지 제4호 서식>

이의신청서

신청]자 : (소속)	(<u>x</u>	급)	(성명	!)		_	
			1. 이	의 신청 시	유			
	2. 첨부서류							
	직원평가규칙에	의거 위와	같이 이의	의 신청을	제기합니다	7.		
			신	청자		인		